



보호·보상제도

보호

- 비밀보장 :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공개 금지
- 보호조치 :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
- 신변보호 : 신고 등을 이유로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요청
- 책임감면 :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·징계 등의 감경 또는 면제 가능

보상

- 보상금 :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, 증대 등을 가져온 경우
 - ※ 내부공익신고자,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 한 자만 해당
- 포상금 : 신고로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
- 구조금 : 신고로 피해나 비용이 발생한 경우(치료비, 이사비 등)



세상을 바꾸는 용기

부패·공익신고

1398
110



신고대상

부패행위

-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·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 또는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- 위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·권고·제의·유인하는 행위



공익침해행위

- 6대 분야(건강,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, 공정한 경쟁,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) 284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

신고방법

상담 및 신고

| 상담 |

- 1398 또는 국민콜 110

| 신고 |

- 인터넷 www.clean.go.kr
- 방문·우편
 -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(세종)
 - 서울종합민원사무소
- ※ 공익신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



국민권익위원회